

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규정

제정 2009. 5. 15. 훈령 제524호
일부개정 2023. 5. 22. 훈령 제742호(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훈령 일괄개정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및 사업을 시민이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안양시시정현장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정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
2.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 아이디어 건의
3. 그 밖에 시정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

제3조(구성 및 운영) ① 평가단원은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 5. 22.>

② 평가단은 복지, 교통, 환경, 지역경제, 민원처리 등 5개 분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분야와 평가단원을 확대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분야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복지 분야: 사회복지, 체육청소년, 문화예술 사업 등
2. 교통 분야: 도로건설, 교통시설, 교통행정 사업 등
3. 환경 분야: 환경, 위생, 청소, 녹지 사업 등
4. 지역경제 분야: 경제, 산업, 기업 지원 사업 등
5. 민원처리 분야: 각종 인·허가 민원, 창구민원,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 등

④ 평가단원에 대하여 시정평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위촉기간) 평가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1회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촉 및 해촉) ① 평가단원은 공개모집(인터넷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)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② 시장은 평가단원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임무소홀, 관외전출, 사망, 질병 등

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.

제6조(평가) ① 평가단은 상·하반기 각 1회 정기평가 기간 내에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정기평가 이외에 수시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건의 등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자료제공 등) ① 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시정의 각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평가단원이 평가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.

제8조(실비보상) ①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활동에 따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
② 평가활동에 참여한 우수 평가단원에게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평가활동을 위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단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3. 5. 22. 훈령 제742호,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
훈령 일괄개정규정>

이 훈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